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4

발의연월일 : 2020. 11. 25.

발 의 자:김정재・추경호・전주혜

송언석 • 권명호 • 이 영

정진석 · 최연숙 · 한무경
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국민들의 '여가가 있는 삶'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 제대로 향유하지 못 하고 있는 직장인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목적임.

그러나 현행법에는 장기간의 학습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을 포함한 아동의 여가 권리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아동은 충분한 여가 시간의 확보 및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고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아동의 여가 보장 등) ① 아동(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. 이 하 같다)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신체적·정신적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아동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조의2(아동의 여가 보장 등)
	① 아동(18세 미만의 자를 말
	한다. 이하 같다)은 과중한 학
	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수
	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.
	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
	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
	신체적·정신적 발달 수준에
	적합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
	필요한 대책을 수립・시행하여
	<u>야 한다.</u>
제7조(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	제7조(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
시행계획) ① (생 략)	시행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2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,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0. 아동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
	<u>사항</u>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